

이 자료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료 할인금액 예시표입니다.

※ 이 표에서 제시한 금액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참고 자료이며,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은 업종, 근로자수, 재해율, 임금총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산재보험료 할인율 : 위험성평가 인정 3년(20%), 사업주교육 인정 1년(10%)

종업종명	보험요율 (천분율)	근로자수	1년간 산재보험료(원)	3년간 할인금액(원)
식료품제조업	19	10	6,384,000	3,830,40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갑)	13	10	4,368,000	2,620,80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20	10	6,720,000	4,032,00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42	10	14,112,000	8,467,200
펄프·지류제조업	24	10	8,064,000	4,838,400
출판·인쇄·제본또는 인쇄물가공업	11	10	3,696,000	2,217,600
화학제품제조업	16	10	5,376,000	3,225,600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1	10	3,696,000	2,217,600
의약품·화장품향료· 담배제조업	8	10	2,688,000	1,612,800
고무제품제조업	21	10	7,056,000	4,233,600
유리제조업	15	10	5,040,000	3,024,000
도자기·기타요업제품· 시멘트제조업	26	10	8,736,000	5,241,600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19	10	6,384,000	3,830,400
금속제련업	11	10	3,696,000	2,217,600
도금업	17	10	5,712,000	3,427,200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 계량기·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 제조업	7	10	2,352,000	1,411,200
선박건조및수리업	26	10	8,736,000	5,241,6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16	10	5,376,000	3,225,600
수제품제조업	15	10	5,040,000	3,024,000
기타제조업	27	10	9,072,000	5,443,200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구분	관할지역	위험성평가 담당자	사업주교육 담당자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및 동작구	02-6711-2843	02-6711-291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및 노원구	02-3783-8314	02-3783-8355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14	033-815-1058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13	033-820-2552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및 기장군	051-520-0525	051-520-0565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052-226-0526	052-226-0563
경남지사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53	055-269-0519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24	055-371-7512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42	062-949-8718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원주군, 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31	063-240-852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24	063-460-3613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53	061-689-4912
전남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02	061-288-8715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2	064-797-7525
충북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및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및 강화군	032-510-0516	032-510-0588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28	031-259-7178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15	031-828-194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8	031-481-755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14	031-785-3359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19	032-680-6551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25	053-609-057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37	053-650-681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38	054-271-2014
경북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고령군, 의성군, 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17	054-478-8063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및 태안군	042-620-5611	042-620-5672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및 단양군	043-230-7122	043-230-7119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및 예산군	041-570-3423	041-570-3406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산재예방 요율제 안내



1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보험료 일괄징수를 받는 사업장(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2. 적용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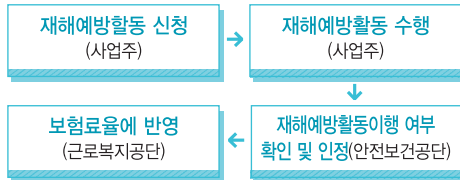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 ※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6호)

3.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 1년
※ 산재보험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괄계산)

4. 업무처리절차



5. 업무처리기관

- 안전보건공단 : 재해예방활동 인정여부 결정
-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 결정 및 보험료 징수
- 고용노동부 :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 여부 결정

2 「위험성평가」재해예방활동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

1.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적용 대상?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절차는?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 중 일부 또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포인트를 중점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신청: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거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4.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3년)동안 산재보험료를 20% 인하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대상은 고용부장관이 별도 정함)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3 「사업주교육」재해예방활동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

1. 사업주교육 적용대상은?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 (법인인 대표이사)
※ 교육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 필수

2. 사업주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수립·제출한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공단에서 검토 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추진절차는?



-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교육센터) 및 지사(교육담당부서) (무료교육)
-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시거나 안전보건교육포털(<http://www.koshats.or.kr>)에서 신청
-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내용은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 위험성평가 및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실습) 등

◇ 상시근로자수 증명 자료(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서류 중 택 1 ·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다음 서류 중 택 1 ·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4.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

-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년)동안 산재보험료를 10% 인하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년)동안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